

# 학칙

제정 1959.9.9. 211차 개정 2025.1.17.

## 제 2 장 학년 · 학기 · 수업일수 및 휴업일

### 제 4 조 (학년도)

학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(개정 2020.10.26.)

### 제 5 조 (학기)

- ①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하되, 각 학기의 개강일 등 세부적인 학사일정은 학년도마다 따로 정한다.(개정 2005.6.21., 2007.12.24., 2017.9.11., 2020.10.26.)
- ② 제1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에 따라 전공,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총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.(신설 2020.10.26.)
- ③ 계절학기: 필요에 따라 방학 중에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 개설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(신설 2017.9.11., 개정 2020.10.26.)

### 제 6 조 (수업 등)

- ① 매 학년 수업일수는 30주 이상(매 학기 15주 이상)으로 한다. 다만, 집중이수제와 연계한 모듈형(세션별)교과 과정 형식으로 운영되는 수업은 1학기 간 1학점 당 15시간 이상의 강의시간을 준수하되 수업일수를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.(개정 2005.6.21., 2017.9.11., 2019.2.19.)
- ② 수업은 주간수업, 야간수업, 방송·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원격수업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 다만, 학교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.(신설 2005.6.21., 개정 2017.9.11., 2020.12.14.)
- ③ 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실습학기제(實習學期制)를 운영할 수 있다.(신설 2017.9.11.)

### 제 6 조의2 (교원의 교수시간)

교원의 교수시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(신설 2020.6.8.)

### 제 7 조 (휴업일)

-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.
  1. 국정공휴일 및 일요일
  2. 개교기념일(5월 15일)
  3. 하계방학
  4. 동계방학
- ② 임시휴업 및 휴가기일의 변경은 필요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정한다.